

202.86호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임시적으로 정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 일부터 2021년 1월 27일 수요일까지 정지, 개정 또는 지시합니다.

- 교육법(education law) 제6502, 6524, 6905, 6906, 6910항 및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8장 파트 59.8, 임상 면허가 있고 뉴욕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현재 뉴욕주에 등록 상태가 아닌 은퇴한 의사, 등록된 전문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조무사, 임상 간호사의 경우, 주정부에서 개발한 신속 자동 등록 양식을 사용하여 재등록하고 해당 등록자의 3년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비를 면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Law)의 제12항은 부서가 본 행정명령에 설정된 민사 처벌을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목적으로 수정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1월 27일 수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주정부가 현재 제한된 양의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백신을 받는 지역과 지역사회를 이해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백신을 투여받는 모든 사람에게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백신에 대해 적합하다고 결정된 특정 우선 그룹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보건부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그룹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개인에게 백신을 투여하거나 개인이 우선순위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달리 알고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투여량당 최대 1백만 달러의 민사 처벌 및/또는 주정부 발행 면허 취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의 조항 또는 반대로 의회 양원 모두의 동일 결의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커미셔너의 역할에 봉사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급여의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이들의 급여는

행정부법에 설정되고, 주 전역의 선출 사무국에 재직한 어떠한 개인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1월 1일에 급여가 인상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